

등 총 5차례의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되어있었으나, 피해자로 유일하게 지목된 사람은 절도신고를 한 적도 없으며, 3만원을 빼앗아버린 적도 없고, 창문으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창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창문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다. 그러나 의외로 경찰로부터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등 오히려 협박을 받아 도난부인의 진술을 묵살 당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후에 인권센터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경찰의 조사내용중에는 피의자가 행했다고 하는 5번째 범행일시는 2001년 2월 21일 오전 11시경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시간은 피의자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던 시간이었다. 이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경찰서 인치 후 10시간 후에 집으로 연락이 와 부모님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보여주며 다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인감증명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97년 진단서는 볼 것도 없다"면서 밀쳐내며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이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려 했으나, 원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또 다시 거부하였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말 정신지체 장애인인줄 몰랐다. 장애인을 왜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는가, 그리고 등록등은 왜 소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목걸이 같은 표식이라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본인의 자백을 받았고 경찰서에 와서도 자기가 알아서 진술서를 쓰길래, 정말 범인인줄 알았다고 말하며 그래서 불구속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자폐성향을 보이고 있어 외형상으로 '장애'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누구나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등 즉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권센터는 한씨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 3인을 상대로 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의 전말을 재조사하여 징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를 했던 담당관이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와 수사원칙에 어긋난 관행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올려 해당 경찰서에 세 사람의 수사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해당 경찰서였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서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게다가 결국 형사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견책'마저도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형사들이 받은 처벌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와 한씨의 부

모님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가와 형사 3인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병원이용비, 심리적 불안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했다. 심지어 한씨의 아버지는 이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족들이 이문제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 결국 중간에 소추하가 이루어지며 아쉽게 끝났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3】

가족 모두 정신지체인, 아무런 지지체계가 없어 더욱 심각 (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과 여수 개도둑 사건)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 형사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없다면 고스란히 가해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인권센터에 직접 의뢰되었던 것은 개도둑으로 몰린(2002. 12.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아들이 정신지체인이고 형, 아버지 등 일가족 모두가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경우였다.

2002년 12월, 쌍둥이 안군형제(형제모두 정신지체, 17세)는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 개농장을 지나다가 둑여있는 개가 귀엽다며 만졌고, 이를 본 주인은 개도둑이라고 생각하여 이들 형제중 동생을 잡아 폭력을 휘둘러 턱뼈가 부러지고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을 본 아버지 안씨(정신지체 2급, 49)는 농장주인을 고발하려고 파출소에 갔는데 오히려 안군형제들이 절도미수로 긴급체포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더욱이 문제는 안군형제중 형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리를 박게 하고 폭격자세의 기합을 주고, 욥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경우는 이웃인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던 터라 다행히 사회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었으나 2심 까지 가서도 기소유예로 유죄 판결이 났다. 안씨가족을 돌보고 있는 조목사는 이들이 과거에도 파출소에서 벌을 받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경찰들은 이들에 대해 기본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이웃이 이러한 구체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 개입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객관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장애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2000년도에 있었던 '삼례 할머니 살인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사건은

인권센터에서 직접 상담한 사건은 아니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다룬 사건이다.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골이라 어느 누구하나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 등 세사람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가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중 2명은 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하였으며 한사람은 5년형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중이다.

【사례4】 청각장애인,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화통역지원 절실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가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하러 나가곤 한다. 처음에는 한 경찰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수화통역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속에서 알게되었는지 이제는 다른 경찰관에게서도 연락이 온다. 그러나 김씨는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화통역사를 부르는 것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고 그저 통역인만이 법률조항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경찰관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수화하는 사람을 급한 대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법대출신이어서 다행히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했던 적도 많았다. 법률용어에 있는 단어들이 수화로는 단어자체가 없거나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었

다. 작은 단어 하나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청각장애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경찰서로 수화통역을 나갈 때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청각장애인의 형사상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했고, 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경찰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사례5】 시각장애인여성 성희롱 고소에 대한 무시

시각장애인여성인 정씨는(25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희롱을 자주 당해오던 정씨는 지난 2003년 8월 80대 노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맞는 등의 추행을 당해왔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정씨가 이전에 2차례의 '성희롱'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며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화가난 정씨는 인권센터로 상담을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송파경찰서는 청문감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과 지구대책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으로 인해 실시된 장애인권교육에 참석도 하지 않은체 현재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사례6】 시각장애인, 대필 대독서비스 거부

지난 2001년 2월, 임씨(시각장애 1급, 52세)는 동업자와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임씨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수 없으니 자신의 직원중 한명이 동석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그럴수 없다며, 동석을 거절하였다. 할수 없이 조사를 끝낸 임씨에게 경찰은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낭독해 주었고, 낭독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임씨에게 확인도장을 찍기 위해 임씨의 손을 잡아 여러 차례의 도장을 찍었다. 조서의 내용도 경찰이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것도 경찰이고, 자신의 손을 잡아 어디에 도장을 찍는지 확인해 주지 않은채 그저 도장을 찍는 사람도 같은 경찰이었다. 이에 임씨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술서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되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수사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 네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진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수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필·대독·점자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넷째, 수사절차상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기구 및 인식이 부재하다.

이렇듯 수사상 장애로 인해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⁸⁾을 꾸려 침해사례 수집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는 장애관련 7개 단체가 참여한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꾸려져 형소법 개정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형소법개정을 통한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

성이 높을뿐더러 침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다음의 보도내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권위는 2002년 9월 20일 전북전주시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조아무개(22)씨 등 3명의 유치장 수용기록, 신체검사기록, 변호접견내용과 본인·경찰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절도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1월 16~20일 수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휴식 없이 밤시간대에 집중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씨가 정신지체 등으로 군면제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경찰이 밤샘조사를 하면서 발바닥과 뺨 등을 때리는 등 피의자들을 압박해 "근무중인 경찰관을 죽이고 권총 1정을 훔쳤다"는 허위자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조씨에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구둣발로 밟거나 "살인죄를 뒤집어쓸래, 아니면 총기절도죄만 뒤집어쓸래"라며 자백을 유도한 정황을 잡아내고 관련 수사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에서 발췌)

많이 알려진 삼례사건의 경우나 속초 암매장 사건 등에서도 비슷하게 진술능력이 약한 정신지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협박이나 가혹행위 등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심각한 경우 살인죄라는 중죄를 뒤집어쓰기도 한다.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와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사건의 피의자중 한사람이 조씨 역시 정신지체장애인이다.(인권센터에서는 조씨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가족들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거부했다.) 그러나 이렇듯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수사절차상의 인권침해문제는 그동안 장애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관심 밖의 문제였다. 즉 일상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 인권센터가 문을 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지체장애

8) 2003년 8월 '수사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꾸려짐. 현재 태원우변호사(법무법인 백상 소속), 고영신변호사, 33기 사법연구생 중 김좌진, 소라미, 이정우연수생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소장, 박숙경팀장, 김정하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

혹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강압수사를 받아 혐의를 뒤집어쓰거나 간혹은 경찰관으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하거나 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비록 드러난 사례가 많지는 않아도 동 사건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황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의 저조함은 예외적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미치기 어려운 폐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수사과정의 부당성 등을 따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담당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 (1)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 일 수 밖에 없다
- (2) 개별 사건에 대해 대처한다는 것이 피해자와 민간단체 모두에게 쉽지 않으며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대처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실제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므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3)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적 대응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 또는 피의자 신분, 장애유형, 범죄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제안서 참조)

둘째,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는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간히 인권단체나 장애관련 단체 등을 통해 드러난 사례와 공식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형사절차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인권보호"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법무부와 경찰청 어느 곳 하나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 문제를 전담하는 직원한명이 없다. 심지어는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어 수사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 실시를 위해 모 경찰청을 방문하였더니 장애인주차장에 경찰임원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이루어지던 3일 내내 벌어지고 있었다. 형사절차상 왜 장애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 검찰, 경찰, 대법원 등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기구에 장애인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장애문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법무부 차원에서 형사절차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인권침해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인권보호수사준칙」 제8조 【장애인, 청소년의 보호】에서 "검사는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보호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6조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서는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고 하여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조인선정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동 준칙은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검사가 관여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수사과정에 대한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이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명령이나 규칙 또는 지침 등을 통해 담아내야 하며 '장애인권교육'⁹⁾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맷으며

1991년 12월 17일 UN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The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CG] 제1원칙 제7항은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재판정이 정신장애인(a person of mental illness)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0원칙 제1항에서는 “본 원칙들은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심리절차나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신장애인임이 판명된 사람 또는 그러한 정신 질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개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¹⁰⁾가 많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장

9)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예를 들어 경계급 정신지체인, 학습장애, 인격장애 등

애인의 범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이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을 준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법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유엔원칙에서 “정신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포함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절차상 장애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소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상호보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설 생활자와 인권침해

강성준(인권운동 사랑방)

1. 들어가며

2004년 4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는 모두 1096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고, 20,245명의 생활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는 2003년 1월 같은 조사에서 미신고시설 수가 1,044개, 생활자는 17,89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설 규모로는 10인미만 시설이 387개소(28.3%), 10인이상 30인 미만시설이 533개소(48.6%), 30인이상 시설이 176개소(16.1%)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설이 있고 이 중에서 노인 시설이 499개소(45.5%)로 9,394명을 수용하고 있고 장애인 시설이 392개소(35.7%)로 7,371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유형으로 이름 붙여진 시설이든 많은 수의 생활자들이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장애노인, 장애아동, 정신장애인으로 다양한 시설에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시설 안에서 겪는 문제는 단순한 통계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시설의 문제를 시설 생활자 본인들 또는 제보자들이 전하는 몇 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외부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신고시설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미신고시설(조건부 신고시설 포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기에 제시된 사례에는 2004년 5월 현재 13개 장애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이하 시설공대위)에서 직접 실태조사한 사례도 포함된다.

2.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사례

1) 타의에 의한 입소와 감금

[사례 1] 시설공대위에서 조사한 정신요양시설 00사랑의집 생활자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96명 중 스스로 들어온 사람은 5명(5.2%), 병원에서 보낸 사람은 3명(3.1%)인 반면에 가족들에 의해 입소한 사람은 63명(65.6%)에 이르렀다. 다른 시설로 전원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6명(6.3%), 현 시설에 그대로 있고 싶다는 경우는 9명(9.4%)인 반면에 퇴소 희망자는 57명(59.4%)에 이르는데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5년 이상 수용된 사람이 19명(19.8%)이고 10년 이상 수용된 사람이 7명이며 특히 3명은 20년 이상 수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 생활자들의 진단서는 발급일이 2002년 9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하루 평균 20건 씩 약 80건이 집중되어 있고 발급 의사도 한 명이어서 진단서 허위발급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사례 2] 제보자에 따르면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000금주학교의 경우 알콜중독자가 아니거나 그 상태가 경미해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입소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입소시 작성하는 회원카드에는 아예 중독증세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짧았을 때 결핵을 앓은 경력만 기록되어 있는 등 전문의의 진단 없이 보호자의 의뢰만으로 입소가 가능한 구조였다. 이런 사람들은 시설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 있다.

시설 생활자 인권문제의 시작은 자신의 의사와는 반하는 입소로부터 시작된다. [사례1]의 경우처럼 미신고시설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호자의 의뢰로 입소했거나 길거리에서 행려자로 경찰에 붙들려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자의로 입소한 경우에도 입소 후 시설에서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름을 깨닫고 퇴소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번 입소하고 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후회는 너무 늦은 것이다.

[사례2]도 미신고 정신보건시설에서 사실상 감금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지도자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을 설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정신과전문

의의 진단을 필수로 하고 있다. 다만, 응급입원의 경우 일반의의 동의만 있어도 입원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72시간 이후에도 계속 수용하려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필수적이다. 입원하는 시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정신요양시설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입소기간은 6월이내로 하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소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소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소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결과 퇴원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신고시설 중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은 생활자 명부 관리, 진단서 유무는 물론 시설에서 매 6월마다 계속 입소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시행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과진단과 상관없는 상해진단서로 입소되거나, 입소일과 관계없는 오래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행정기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당연한 법 위반도 해당 시설이 미신고 상태이지만 신고시설을 준비하는 조건부신고 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소가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의 또 다른 한 축은 가족 등 보호자가 맡고 있다. 이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이나 정식 신고시설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기간만큼 “보기싫은 사람”을 격리시켜주는 미신고시설을 찾게 된다. 이렇게 사회와 영구 격리되고 치료와 요양 서비스는 접할 수 없는 생활자들은 수용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복귀로부터 더욱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2) 징벌방 운영

[사례 3] 시설공대위에서 조사한 조건부신고 정신요양시설 00사랑의집의 경우 남자 숙소 한켠에 쇠창살로 된 독방을 ‘보호관찰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7평 남짓 되는 공간에 9개의 독방이 있는데 생활자들이 규칙을 어기면 여기에 감금되고 3일~7일간 기도라는 명목으로 급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여자숙소의 경우 아예 환기와 채광이 되지 않는 철문 안에 2개의 보호실이 있었다. 조사 당일 시설관리자들은 잠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참고라고 둘러댔으나, 문을 열자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여성 생활자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나타났다. 징벌방 벽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낙서가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이 시설의 생활자들은 면담조사에서 “50 평생 이런 데가 있다니 기가 막히다. 보호실이 말이 안 된다. 여기는 감옥이다. 교도소가 차라리 낫겠다”, “보호실에서 감금되어 3일씩 5차례 금식당한 적이 있다. 총반장이 벌칙을 결정하고, 벌칙은 금식과 감금이다”, “얼마 전에는 4일 동안 보호실에 감금되었다. 플라스틱 통에 소변을 보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조사 당일 아침에도 심하게 맞아 얼굴이 엉망이 된 사람이 발견되기도 했다.

위 [사례 3]의 시설에서는 환자의 치료나 보호 목적이 아니라 생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호관찰실’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규칙 위반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격리조치를 하는 ‘징벌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생활자 입소 시 무조건 보호실에 일정기간 가둠으로써 생활자를 길들이는 통과의례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시설 내 규칙을 어기는 경우, 예를 들어 예배시간에 준다거나 잠담을 한다거나 사소한 시비가 불어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어김없이 징벌방에 가두고 있었다. 이 안에서는 ‘금식기도’를 명목으로 장기간 강제금식이 행해지고, 종종 관리자에 의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생활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관리자들은 폐쇄형 시설 안에 또 다른 폐쇄공간을 만듦으로써 생활자들을 시설 규칙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의사의 진료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시설 내 치료와 요양의 과정에서 격리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 격리치료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치료과정에서 의료적인 필요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근거를 남겨 추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 사례의 시설에서는 이런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고 ‘보호관찰실’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교정시설이 징벌과 사회교화를 그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복지시설은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또는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그 존재목적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복지시설에서 생활자를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징벌방까지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 ‘징벌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임시로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폐쇄되었지만 추후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진 후에는 언제든 다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설공대위에서는 이 시설의 시설장을 형법에

서 금지하는 감금으로 고발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 폭행

[사례 4] 00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 봉사자로 갔던 교회 청년들은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을 심하게 때리고 밭로 차는 데도 비장애인 관리자들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넘기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또 식사 시간에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남자 정신지체장애인이 턱이 빠져 밥을 흘려 먹는다고 비장애인 남자 2명이 끌고 가서 폭행해 어금니가 빠지고, 여성 정신지체장애인 중 한 명이 온몸에 멍이 들고 성폭행 의혹을 보여주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설에서는 남성장애인들과 여성장애인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사례 5] 00원은 부랑자 수용 조건부 신고시설로 치매노인과 정신지체장애인 90여 명을 2명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다. 가족의 제보에 따르면 60대 치매노인이 입소 이틀만에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흉골 부위가 금이 갔으며 온몸에는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시퍼런 멍이 든 채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은 시설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온적이었다. 시설공대위 조사에서 시설 측은 입소 전에 다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피해자의 상처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결국 사건 발생 한 달만에 가족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쇄형 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로 전형적인 사례가 폭행이다. 시설 내 폭행은 생활자 사이 위계관계를 바탕으로 관리자의 묵인 하에 벌어지거나 관리자 본인에 의해서도 자행된다. [사례 3]의 시설에 대한 시설공대위 조사에서는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을 구별 없이 같은 방에 수용하고, 알콜중독자를 관리자나 방장으로 임명해 정신장애인들을 대리 지배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정신장애인의 학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는 생활자의 약 30%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증언할 정도였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조사 후 보복이 두려워 자 유로운 증언이 어렵다는 점, 상대적 약자여서 주로 피해자 입장인 정신장애인들로부터는 충분한 증언을 듣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 내 폭행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설 내 폭행의 심각성은 그 피해정도의 심각함에만 머물지 않는다. 감시감독

을 받지 않는 폐쇄형 시설에서 벌어지는 폭행사건은 대부분 시설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묵인되거나 방치된다. [사례 5]의 경우도 피해자 가족이 시설공대위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었다. 일단 시설 내부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므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시설 측이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생활자 다수가 치매노인 등 자기 의사표현이 힘겨운 사람들이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한 명 또는 여러 명인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등 진상은 밝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나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법적인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례 5]의 00원의 경우 평소 관할 경찰이 길거리에서 잡은 부랑자를 이 시설에 수용시켜왔다. 경찰 입장에서 이 시설은 귀찮은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해 주는 고마운 존재인 셈이다. 그 때문인지 피해자 가족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는데도 경찰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신고시설은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고 시설장의 권한이 막강한데도 생활자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 행정기관의 엄격한 감시가 부재하고, 민간 단체의 선의의 감시활동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위 사례는 우연적,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폐쇄형 복지시설이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00원은 생활자가 90여 명에 이르는데도 상주 관리자는 목사와 그 부인 등 2명에 불과해 충분한 치료와 요양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이번 폭행사건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생활자들을 격리된 공간에 사실상 감금해 두고 외부접근을 막는 폐쇄형 시설은 언제나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4) 외부 소통권

[사례 6] 시설공대위가 조사한 00정신요양원은 생활자의 외부소통을 철저히 막고 있었다. 가족들과의 면회는 사무실에서 원장, 총무 등 시설 관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생활자들은 시설 내부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호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화는 숙소 내부에는 없고 관리자 허락 하에 관리실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없었다. 편지는 봉하지 않은 채 원장이나 총무에

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 측의 내용 검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TV나 라디오가 없는 것은 물론 신문 반입도 이뤄지지 않아 외부 세계와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이런 단절은 시설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사례 7] 시설공대위는 변호인단 소속 변호인과 함께 00사랑의집을 방문,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시설 관리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할 수 없다”며 면회 자체를 거부하고 인권활동가들을 내쫓았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는 면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당연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바빠서 나가볼 수 없다”,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 시설은 시설공대위가 감금, 폭행 등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곳으로 생활자 면회를 통해 현장조사와 검찰고발 이후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다. 특히 지난 현장조사에서 시설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증언한 생활자들이 이후 시설 관리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시설 관리자들은 동행한 변호사의 면회요청마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보호자의 동의”를 핑계로 거부했다.

내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시설관리자들은 되도록 면회를 제한하고 편지와 전화를 검열하기 마련이다. 외부와의 연락이 원천 봉쇄된 생활자들은 시설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례 7]에서 문제가 된 시설의 경우, 내부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의 무대응으로 생활자들을 계속 가둬둔 채 운영되고 있었다. 시설공대위에서는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을 증언한 생활자들이 이후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아예 면회 자체를 거부당했다. 소송 수임을 위해 방문한 변호사의 면담마저도 거부당한 것이다.

또 면회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가족들에 의해 유기된 생활자들의 경우 가족과 시설 측의 결탁으로 아예 외부 연락 자체를 금지당하기도 하므로 면회가능 여부를 가족들이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악의적인 보호자의 경우 생활자를 감금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와의 면회는 기본권 침해를 받은 생활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

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 어떤 면회든 대화 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 관리자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배제된 독립된 면회 공간이 시설 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5) 기타

이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공대위가 직접 조사한 00정신요양원의 경우 생활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방에는 온돌방 한켠에 변기와 샤워기가 아무런 가리개도 없이 노출된 채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방 안에서 다른 생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소변 처리를 해야 한다. 또 주간에는 방문을 절대 잠그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생활자의 개인 사생활이 철저하게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한 여성 생활자는 “성추행을 남자실장들을 우대하는 행위로 인정해준다. 문을 닫을 수 없어 목욕할 때도 남자들이 쳐다본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시설공대위에서 조사한 00정신요양원은 교회건물증축, 주변마을 소작, 목사사택 증축에 생활자들을 동원해 무임금으로 노역을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자들은 농번기에는 새벽 1~2시까지 일했고, 노역의 대가로는 하루 담배 몇 개 피나 커피가 고작이었다. 생활자들은 “봉사차원이 아니다. 건축조와 영농조가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 일요일도 일을 하는데 일당은 담배 10개피 뿐이다. 집에 가고 싶다”, “작업이나 봉사활동 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응하지 않으면 폭언을 말할 수 없이 심하게 한다”고 증언했다. 시설 측은 봉사활동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절차를 갖추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상황이 이런 태도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에서는 시설 내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것은 물론 촉탁의 등 아무런 의료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많다. 00정신요양원에는 중증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생활자들이 있는데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CP라 불리는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게 한다. 생활자들은 “치료가 되지 않고 성격만 망가지고 있다. 복수심만 생긴다”, “다리를 재수술해야 하는데 병원에도 갈수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또 한쪽 귀도 잘 안 들린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지만 병원에 안 보내준다”고 호소했다.

한편 종교강요의 문제도 심각했다. 시설공대위가 조사한 조건부신고 정신요양시설 00사랑의집은 일과의 대부분이 기도와 예배로 채워져 있었다. 생활자들은 매일 새

320
29

벽 4시 예배,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 아침 예배, 12시 점심, 16시 예배, 18시 저녁 식사, 19시 저녁 예배, 21시 취침까지 하루 4회의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또 매월 1일~10일에는 철야기도, 시설 창립일인 7월 31일부터 9월초까지는 40일 철야기도, 매년 말부터 연초까지 7주간 철야기도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일과가 종교행사로 채워져 있다. 생활자들은 “예배 시간에 졸면 혼난다.”, “졸다가 낙인찍히면 보호실에 보호되며 하루를 금식 당한다”, “예배 중 얘기하거나 움직이거나 싸우면 징벌실에 갇히고 금식, 구타당한다”, “여기에 비하면 청송감호소는 양반이다. 보호실에서 폭행 당하고, 몸 아픈 곳을 밟고, 물을 끼얹고, 박종철 당하듯이 당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자칫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경우 폭력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등 생활자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도원에서 진행하는 예배와 기도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시설공대위가 조사한 또 하나의 시설인 00정신요양원은 목사와 전도에 의해 병을 낫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안수기도가 자행되어 왔다. 하지만 안수기도는 1명을 눕힌 채 팔다리를 6명이 잡고 머리 뒤에서 양쪽 눈을 염지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15분 이상을 누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생활자들은 “사지를 묶어놓고 입을 수건으로 묶고 눈을 축 손가락으로 넣고 약을 강제로 먹인다”, “손을 묶고 누인 다음 눈알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비인간적이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입을 모았다. 실태조사에서 생활자 30%가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새벽 5시부터 하루 4회 예배강요와 수시 철야예배 등 개인의 종교와 관계없이 종교생활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시설이 기존 기도원 형태의 종교시설에서 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아예 소유주가 종교기관인 경우도 있고, 목사가 개인자격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자들에게 ‘선교’라는 명목으로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책

1)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침의 전면 재검토

197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설치기준과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하고, 30인 이상의 수용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까다로운 설치기

준과 종사자 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해 대부분의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허가시설로 운영되어왔다. 1998년 7월 발효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시설운영권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부여했다.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시설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이 존치되어 대다수 무허가시설은 미신고시설로 지위만 변경된 채 여전히 위법시설로 남았다.

미신고시설에 화재참사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02년 5월 22일 ‘미신고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의 핵심은 신고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잠정적인 조치로서 2005년 7월까지 법정된 신고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미신고시설을 ‘조건부시설’로 등록하도록 했다. 2004년 4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신고시설 1,096개 중 조건부 신고시설이 902개에 이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법이 정하는 신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설비 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 몇십년 동안 불법시설로 있었던 복지시설을 법 테두리 안으로 흡수해 양성화하려는 것이지만 내부 인권침해 사실들을 숨기고 있는 문제시설들이 동반해서 합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재정 지원요건을 엄밀하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안될 것이다. 민관합동으로 미신고시설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양성화 대상 시설 포함 여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지침 자체를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문제시설의 폐쇄

현재 정부의 시설정책은 시설 생활자가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시각에서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제시설에 대한 처리에서 드러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제1항은 문제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사유는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

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이 경우 동법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는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동법 제35조 제2항 및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난 시설공대위 활동 결과 몇 개의 문제시설 상황이 세상에 알려졌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문제시설로 지적하고 폐쇄할 수 있는 데도 폐쇄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미신고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고수를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변하는 정부의 고답적인 자세에 있다. 정부가 시설운영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설 생활자 편에 서 있다면, 이들이 2005년 7월까지 문제시설 안에서 방치해둘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시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시각의 전환인 것이다.

3) 국가책임의 강화

가족들 간의 불화나 재산 문제 때문에 시설에 유기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시설운영의 폐쇄성에 그 원인이 있다. 수용시설은 신체구금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입·퇴소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 절차도 투명해야 할뿐더러 근본적으로 입·퇴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형 수용시설은 없애는 방향으로 개방형 이용시설은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국가기구가 이를 철저하게 관장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미신고시설이 창궐해온 역사는 모든 책임을 보호자와 가족에게 떠넘겨온 국가의 책임방기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와 함께 소규모·개방형·이용형 시설을 늘리고 시설 서비스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은 그 자체로 언제나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안고 있으므로 소

규모 시설로 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있는 대규모 시설은 분할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또 생활자의 치료와 요양이라는 복지시설 본래의 목적을 충족하려면 생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시설 생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 단순히 이들이 시설 내에서 겪는 처우의 열악함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많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시설설비의 개선, 생활자들에 대한 처우의 개선은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을 허물기보다는 더 높일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가고 싶다”는 시설 생활자들의 눈빛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설은 “많이 가둬야 돈벌이가 된다”는 시설 측의 영악함과 “귀찮은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가족들의 고통, “그냥 이렇게 살지 뭐”라는 생활자들의 체념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그 밑바탕에는 “저들은 가둬둬야 해”라는 국가와 사회의 안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활자들을 가두는 용도의 시설 자체를 과감하게 없애는 ‘탈시설’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국대회" 개최를 꿈꾸며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1. 들어가며

연구소의 상담 중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담내용은 다양했었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동안의 상담추이를 간단하게 보면, 과거의 부모들 중심에서의 교육문제가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정신지체 성인중심으로의 재산권과 소비자권리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따로 발표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특별히 장애가진 사람 스스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산권과 소비자권리' 측면에서의 상담을 별도로 짚어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연구소의 상담 중,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례를 다시 보고자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모든 정신적 장애영역이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가 '정신지체 장애가진 사람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잠자는 자의 인권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장애운동과정에서 장애가진 사람 스스로 거리로 나왔을 때의 그 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영역은 이 '스스로에 의한 스스로의 운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모회중심의 운동성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그 인권의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장애인 사람 스스로'에 주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신지체(정신적 장애 영역이라 해도 무방하다)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상담사례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이 어떠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지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2. 정신지체 인권침해 사례의 특징

1) 재산권 침해와 폭력 등, 강도 높은 인권침해가 집중되어 있다.

인권 중 뭐가 우선하고 뭐가 나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침해내용이 여전히 노골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권적 인권으로부터 사회권적 인권, 즉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소유권 보장'과 '개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금지'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침해 양상은 폭력도 아주 심각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해도 큰 액수를 황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강도 높은"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폭력을 당한 수준이 심리·언어적 폭력 수준을 넘어 항상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데다가, 재산권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가해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일회적인 경우도 있지만,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의 살아오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혹은 학교나 직장, 가족 등 일상생활에 접하는 사람들에게서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실제 사건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경지에 이르러서야,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알게 되고 이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 자신의 당하는 인권침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특별히" 보지 못하는 둔감함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K씨는 하루종일 냉방속에서 TV를 보는 일로 하루를 보냈고, 집에는 먹을 것이라곤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의 아버지와 동거녀는 그를 늘 방치해 두었고, 이 상황을 나무라는 친척들에게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다. 어느 날 K씨가 한 달동안 없어져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모지역에 가는 버스표를 끊어 모지역으로 보내버렸고, K씨는 한달이 넘게 걸려 집까지 걸어서 찾아와 이 사실이 밝혀졌다.

[사례] 정신지체 2급이 친오빠는 00지역의 회사를 다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오빠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가족들은 오빠가 그 사실을 모른채 무슨 문제가 생겼는 줄 알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부처 주었다. 그후 그 여자는 오빠에게 카드를 만들게 하여 자신의 술집에서 카드로 결재한후 그만큼의 현금을 가져다가 흥청망청 쓰고 다닌 것이다. 가족들은 다시 약 3천만원의 카드빚을 간신히 해결해 주고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P씨는 벼룩시장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하러 그 회사에 찾아갔는데, 그 회사직원들은 P씨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알고 대출해주겠다며 P씨의 명의로 카드6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카드회사들은 P씨에게 민사상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청구해 왔다.

[사례] A학생은 다른 반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A학생은 그 일의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절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2) 한두번 일어나는 일이 아닌, 평생을 걸쳐 인권침해가 발생한다.

누구에게나 인권침해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 어떠한 피해, 곤란, 침해를 한두번 경험하면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다시는 그 일을 당하지 않을 각오와 준비, 또는 대응방법을 기억한다. 그러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카드 사기나 핸드폰 사용 시 명의도용사기, 보증사기 등의 피해를 보면 그 일이 한번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당연히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결국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때문에 가족들은 그들의 사회생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성인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가족들은 장애가진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임의로 시설입소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그들의 사회생활을 막음으로써 해결한다면, 아마 모든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 시설로 들어가거나 평생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누가 이들에게 시설, 집안이라는 "갇힌 공간"을 강요할 수 있을까?

[사례] 공씨의 어머니는 약 3년 전부터 연구소 인권센터의 단골손님이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김없이 서너달에 한번씩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인권센터를 찾는다. 물론 문제의 주인공들은 모두 아들인 공씨(당시 26세, 정신지체 3급)다. 처음 공씨의 어머니가 인권센터를 찾았을 때는 정말 공씨의 집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보증사기와 각종 카드사기사건으로 전화를 하셨다. 공씨는 정신지체 3급으로 중학교까지는 특수학교를 고등학교는 일반학교를 다녔다. 어릴 적부터 말이 어눌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동네 아이들의 놀림의 대상, 폭력의 대상이었다. 부모는 어려운 살림과 공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맞벌이를 하였고, 공씨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다. 그 뒤 공씨는 동네 불순한 청년들의 심부름꾼이 되었고,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하고 함께 몰려다니게 되었다.

그나마 공씨는 동네 꽃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꽃가게 주인은 공씨의 가족들이 모르게 공씨의 인감증명을 떼어 보증을 세웠고, 각종 카드를 만들어 현금대출을 하였다. 그후 꽃가게 주인은 10억의 사기를 친 죄로 수감되었고, 공씨의 집에 압류처분과 카드사의 빚독촉이 있은 후에야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공씨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부 카드사와는 재판을 통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가족들은 잠시 안심하고 있다. 재판은 판결당시, 공씨에게 한글을 쓸 줄, 읽을 줄 아느냐고 질문하였고, 이름은 쓸 줄 알지만 카드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한글이해력이 부족했던 공씨에게 "한글해독능력이 없다면,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씨의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남아있는 카드 명의도용건이 몇 건이나 남아있는데다, 작년초에는 동네 친구의 꼬임에 빠져 가출을 하였고, 동네친구의 성폭행범죄시 밖에서 망을 봐준 죄로 공범으로 몰렸다. 그러나 고소된 것도 모르는 공씨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수개월을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후에도 가족들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씨가 갖고 있지도 않은 핸드폰 요금이 날아온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공씨가 노숙할 당시, 함께 노숙하던 아저씨가 공씨를 데리고 가서 핸드폰을 공씨의 명의로 계약하였고, 처음에는 본인이 요금을 지불하다가 두어달 많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 결국 계약자의 주소로 요금청구서가 날아왔고, 공씨

는 그 노숙자의 이름도 주소도 몰랐다.

최근까지 공씨의 가족은 앞서 당한 카드사기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각종 카드 사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있다. 공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애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와 진정서를 만들어 여기저기 제출하고 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씨의 어머니는 현재 공씨가 집에 돌아와 있지만, 특별히 직업도 없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가족들 누구도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출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갈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제대로 후견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평생을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를 딱히 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경증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성인의 경우, 딱히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없는 상황에서 후견을 자처하는 누군가에 의해, 혹은 가게주인 등 고용주에 의해 임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혹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하여도, 어느 누구도 이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의 후견인이 아닌 상황에서 장애인단체가 아무리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나선다한들, 이 또한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하다.

[사례] 동네 미장원에 정신지체를 가진 성인남성이 일하는데, 동네에서 말이 많다. 왜냐하면, 이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을 월급도 안주고 부리면서, 그 사람을 사람대접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미장원 주인은 그 사람을 구박하고, 일을 시키는데 동네에서 이 일에 대해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 것은 미장원주인의 남편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도망을 친 적도 있었는데, 곧 남편에 의해 다시 잡혀왔고, 미장원주인은 장애인 한명 취업시켜 준다고 데려와서는 이용해 먹기만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사례] 서울 서초구의 모식당에는 정신지체를 가진 성인여성이 일하는데, 이 식당주인은 이 여성에게 임금도 주지않고, 이 여성에게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마저 갈취하고 있었고, 추후에 이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 갈취한 수급액에 대한 보상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사례] 서울 용산구의 모식당에 정신지체를 가진 성인여성이 일하는데, 이 여성의 임금은 본인이 받는것이 아니라, 처음 이 여성은 이곳에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보내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가족이나 친인척관계도 아닌 타인이 이 여성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임금을 대신 가져가고, 이 식당이 문을 닫으면, 다른 음식공장으로 보낼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 하였다.

3) 주변의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가 많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놀랍게도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재산권침해의 경우,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아는 사람, 형제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앞서 소개한 재산권침해 말고도 다수의 사례가 전남편, 형제, 동업자, 사업주, 동네 주민 등의 속임과 협박에 넘어간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과 비교해 보아도 아는 사람들이 정신지체 장애특성을 알고 이용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 혼자서 방어할 수 없는데다가, 주변에서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돋고자 하여도, 오히려 가족, 친척이 '후견을 자처'하는 바람에 나설 수가 없다.

이렇게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후견을 자처함으로써 이들을 소유하려는 범죄'에 대해서, 분명 현재의 법과 정책으로는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사례] 이혼한 여동생(정신지체 3급)은 전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여 연체중이다. 또한 신용대출에서 대출도 받았다. 여동생의 남편은 동생에게 유파지르고, 달래서 카드를 발급받게 하였다.

[사례] 동생부부(48세, 정신지체 2급)는 충분히 생활할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재산을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하였다. 형으로서 집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수가 없고, 현재 남은 재산까지도 위태롭다. 형제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가?

[사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K씨는 동업자가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세웠고, 현재 자신의 집이 차압을 당하게 생겼다.

[사례] P씨(정신지체 2급)는 운송회사에 다니는데, 사장이 P씨의 명의로 각종 카드를 만들어 4천여만원을 썼다.

[사례] P씨(50세, 정신지체 3급)는 가족이 없으며, P씨의 부인(정신지체)는 작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부인동생들이 와서는 P씨를 시설에 입소시키고, P씨가 20여년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을 자신들 앞으로 명의이전 시키려고 하고 있다. P씨는 부인이 살아있을 때도 살던 집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입주권이 있었는데, 이 또한 부인의 형제들이 이사과정에 명의 이전 시켰다.

[사례] 울산의 모다방에서는 동네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여성을 취업을 시켜준다고 부모 몰래 꼬여내어, 철원과 마산 등에 보내놓고 가사노동을 무임으로 시켰다. 이 여성에게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집에 있기 싫지 않느냐, 돈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꼬여냈고, 부모는 실종신고와 전단지를 뿐만 아니라 애태개 찾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하였고 의심을 품은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본인이 원해서 갔다'는 이유로 '경찰의 미아찾기'로 사건을 마무리 시켰다.

[사례] O씨(40대, 정신지체 2급)는 수급권자로 생활이 어려운데, 시동생이 카드를 빌려가 3천만원이 연체중이다.

4)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경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예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있었던 일이다. 정신지체를 가진 부모와 슬하에 딸이 둘 있었는데, 첫아이는 정신지체 1급으로 특수학교를 중퇴하였고, 둘째는 경미한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자녀로 통합학급을 다니고 있었으나 그나마 학교에 잘 가지 않았다. 학교를 중퇴한 이유나, 학교를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거나 통학차량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급권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나, 의식주외에 교육이나 기타의 일상생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둘째자녀는 학교를 가지 않을 뿐더러 부모에게 갖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동네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

니면서 자잘한 절도행위의 망을 봐주는 일도 하였다. 또한 동네 아이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여, 주변에서는 혹여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였다.

이 가족의 문제를 주변 사회복지관과 이웃들이 걱정을 하였지만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 그저 아무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를 포함하여, 몇 달 전 목포시 정신지체가족의 참혹한 화재사건(함께걸음 04년 3월호 "누가 이들을 불태워 죽였는가" 참고)을 보면, 우리는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경우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목포사건은 그나마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재가복지 담당팀의 몇번의 방문과 도시락 서비스등이 대안일수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적절한 때에 교육받고, 극도의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가?

[사례] 특수교사 L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의 앞날을 걱정하며 삼당을 요청해 왔다.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진 학생은 본인보다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살고 있다. L씨는 이 학생이 직업재활훈련을 잘 받아, 지방의 기숙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로 취업이 되어 어머니에게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이 금전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있어 L씨는 담임교사로서 고민하다가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 재활팀 사회복지사에게 맡기고 안심을 하고 있던 터에, 갑자기 숙부란 사람이 전화를 하여 '어디로 취업이 되었느냐, 월급이 얼마나' 자신이 학생의 금전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숙부는 학생의 가족이 생활이 어려울때도 전혀 왕래가 없었고, 최근 학생의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땅을 팔게 되자 그 돈마저 자기의 사업비로 아무런 차용증이나 이자 없이 써버렸던 사람이다.

[사례] 목표의 화재사건으로 유명해진 이 사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일가족(부모, 아들2)이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어진 상황에서, 한겨울 냉방속에서 촛불을 켜고 잤다가 화재가 나 큰아들만 살아남고 일가족 3명이 타죽은 사례이다. 이 가족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물상을 모으는

것과 수급액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 마저도 고물상 주인이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갈취하여 결국 이 가족들은 전기세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은 화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의 노력으로 밝혀질수 있었는데, 가족 누구도 이 고물상주인에게 자신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었고, 결국 전기세를 못낸 것이 화재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5) 자기결정권논의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배제되고 있다.

몇년전에 일본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가 "People First"운동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2회의 People First대회가 치러진 후였는데, 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가 행사를 준비하는 그야말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국대회" 같은 것이었다. 모든 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과 마무리의 전 과정을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나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 나서서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보지도 못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웬지 불가능한 부분이나 가족들의 배후조정(?)여부를 묻기에 급급 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이 People First운동은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70년대부터 스칸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장애운동의 한 흐름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옮겨진 것이다.

나는,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무엇이든지 '스스로에 의한 스스로의 운동'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인권논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장애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계의 자기결정권 논의에서 정신적 장애영역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타장애영역에 비해 당연히 그럴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결정권논의에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입김이 필요한 때이다.

나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침해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시설입소'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독립생활이나 공동가정생활형태가 아닌 대(大)중(中)규모의 시설입소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를 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설안에서 폭력이나 종교강요행위 등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발과 복장의 자유, 하루일

과의 자유, 외출의 자유, 취미·여가생활의 보장, 식단의 자유, 기상·취침시간의 자유, 사적소유물의 보장, 성생활, 가구배치, 동거인의 선택 등 시설입소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패턴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시설입소를 본인의지에 상관없이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의 임의로 추진하는 경우, 그것은 백이면 백, 인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밖에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족일 수밖에 없다. 앞서 이야기한 시설입소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불임시술을 강요하여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산상속에 있어서 한쪽부모와 형제들이 재산권 자체를 부정하고 재산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에서 보면 가족의 의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족관계'라는 틀 안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가족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하지만 좀 넓은 아량으로, 좀 다른 각도로, 봐주었으면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 장애운동의 삼대(三代) 적은 바로 "사회복지사, 부모,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사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는 서비스의 공급처로서, 부모의 계획에 의해 인생이 재단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 자기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나가 되기를 바래본다.

[사례] '36세, 정신지체 2급의 딸을 입소시킬 시설을 찾고 있다.

[사례] 정신지체 누나가 있다. 지금은 아버지와 생활하는데 입소시킬 시설을 알려달라,

[사례] 부모 사망 후 큰오빠가 정신지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평생 그곳에 있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른 형제들은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

[사례] 정신지체 3급의 22세 조카의 입소시설을 알려달라, 부모가 이혼하여 시설입소밖에 방법이 없다.

[사례] 언니는 34세로 정신지체 3급이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생활 능력이 없다. 전셋집도 사기를 당해 잃었고, 어머니는 사채까지 손을 대었다. 언니를 데리고 살수 없다.

[사례] 부모가 큰오빠에게만 유산을 남기려하고 본인과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남동생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한다. 부모는 큰오빠가 재산을 받아 남동생을 돌볼 것이라 하지만, 큰오빠는 사치가 심하여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동생을 보호할수 있는 후견인을 세울 방법은 없나?

[사례] 자신의 언니(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등록하지 않음)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고(남편은 이전에 사망) 보험회사로부터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언니의 시댁쪽 식구들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돈을 수령하여 이미 5천만원을 사용하였고, 가족회의를 통해 시댁쪽 다른 사람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리 언니가 받게 되는 보상금을 왜 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댁 식구들 중 한명이 관리하나?

[사례] 정신지체를 가진 동생부부의 장모는 딸을 이용해 장애혜택을 누리고, 강제유산을 시키고, 강제이혼을 시키려한다.

6) 앞으로 소비자권리에서의 피해가 늘어갈 것이다.

[사례] S씨(31세, 정신지체 3급)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오빠 시간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등의 성인광고 문자를 받고는 전화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며칠에 걸쳐 핸드폰과 집에서 각각 수차례 전화를 하게 되었다. 성인전화방과 같은 이 전화에 대한 사용료를 모르는 S씨는 나중에 핸드폰 요금 3백만원, 집전화 요금 3백만원이 나온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은 손씨를 심하게 나무랬다.

[사례] N씨(20대, 정신지체 3급)는 핸드폰을 계약하고 6개월을 사용하였고, 등록장애인에게는 요금할인혜택이 있다는 나중에야 알았다. 알고 난후, 회사측에 6개월간의 요금에 대해 할인한 금액을 소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할인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당신의 책임이라며 소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N씨는 어찌 할바를 몰라 상담을 의뢰하였다.

[사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딸을 둔 H씨는 최근 딸이 가출하여 핸드폰을 만들어 과도하게 사용하고 다니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3. 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1)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계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이상 부모운동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의 조직,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즉 불을 누가, 어떻게 당길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적어도 이를 위해 장애계 내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계의 흐름과 활동과 행사를 속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그럴 수 있는 장애계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시각장애중심에서 흐름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부모운동을 뛰어넘어-의 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부모운동진영에서도 '부모들에 의한, 부모들의 운동'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되는 진영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2)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침해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강도 높은 인권침해 발생,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인권침해, ▲주변의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인권침해,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경우의 인권침해, ▲소비자권리에서의 피해급증 등이다. 앞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기존 사회의 법과 제도로서 보장되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과제로서는 '성년후견제'와 같은 자기 결정권 존중 속에서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나 후견을 차치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도 없거니와, 이제는 혈연적 가족이라 하여 무조건 후견인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이미 발생해 버린 각종 사기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당장 카드사나 은행등이 본인에게 요구하는 민사상 보상에 대해서도 막막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발생되는 각종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해야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3) 사회적 인식변화가 급선무이다.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을 '모질이, 박약, 바보' 등으로 폄하하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함부로(?) 지체나 청각, 시각장애인에게 대놓고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처럼, 정신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눈도 마음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열린우리당 정동영씨 사건을 바라보면서 31세의 뇌병변·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사람이기 이전에 방송의 극적 효과를 위한 부품, 정치쇼의 들러리, 시설내의 장식품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사람을 이용한 정동영등의 정치인과 일부 언론사들은 아마도 일부 시민들의 인식수준과 자신의 인식수준을 동급으로 놓고, 이정도의 방송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물론 장애계 등의 반발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다시 알려낼 수 있었지만, 우리 전사회가 다시 인식하지 않고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야말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커다란 폭력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인식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자연개조와 사회개조와 인간개조 중 가장 힘든 것이 인간개조'라고. 우리안의 기존틀을 뜯어내고, '모든 인간의 인권과 평등'이라는 대명제를 우리 안에 다시 심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자립자활력이란 단어가 있다. '스스로 서고, 스스로 활동(운동, 움직이는)하는 힘'이란 뜻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립자활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유독 정신적 장애를 가진 영역에 대해서는 자립자활력을 세워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때론,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자립자활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느냐'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자립자활력은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보조인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쉬어진다.

나는 조만간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는 성명서 하나쯤 낭독해 주면 좋겠다. 이것 그저 나의 작은 소망이지만, 아마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그 존재 자체가 고유하고 또한 존엄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 부록 -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고영신(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한 연구모임 소속)

1. 들어가며(제안이유)

왜 형사절차상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야기 하는가

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¹¹⁾

우리 헌법 전문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¹²⁾ 이러한 평등의 원칙 또한 기본권보장의 기능과 방법에 관한 최고의 헌법원리이고, 공동체생활관계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사유로써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적 법질서로서 헌법해석과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과 기준이 됩니다.

11) 국제인권규약 또한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2) 국제인권규약(B규약) 또한 제26조에서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 제10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11조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 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하여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적어도 진술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이라 함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평등이론’을 기계적 적용으로 적용할 경우 장애인에게는 합리적 차별의 준거가 되는 ‘능력’ 그 자체에 핸디캡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영원한 불평등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1조에서 도출되는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필요(needs)’에 따른 평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평등”으로 해석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간에도 장애의 특성이나 그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 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의 내용은 많은 부분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히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은 인신구속이나 구금이 수반되는 절차의 특성상 다른 부분에 비하여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의 정도가 높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다. 따라서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재판의 과정상에서 자행되는 장애인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 인권의 보호 및 현재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하는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현행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개정제안의 내용

가. 보조인의 범위 확대

(1) 보조인 제도의 의의

보조인(輔助人)이라 함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情誼)¹³⁾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補助者)를 말합니다.¹⁴⁾ 보조인은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의 발현으로 자진하여 되는 것으로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보조인 제도는 변호인제도를 보충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최근 변호사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설명

13)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국어사전).

1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 140.

되고 있습니다.¹⁵⁾

그러나, 보조인은 ①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신고만하면 될 수 있고,¹⁶⁾ 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③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하는 수사단계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수사 및 형사소송단계에서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인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 33> 보조인의 자격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p>제29조(보조인)</p> <p>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및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p> <p>② ③ 생략</p> <p>④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고인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제29조(보조인)</p> <p>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p> <p>②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15) 주석 형사소송법, p. 12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p. 140.

16)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표 34> 보조인의 신고 절차

현행 형사소송규칙	개정제안
<p>제11조(보조인의 신고)</p> <p>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p>	<p>제11조(보조인의 신고 등) ① 생략</p> <p>②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있다.</p> <p>③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담당하거나 했던 교사</p> <p>나. 현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시·군·구(자치구에 한함)의 담당 장애인관련상담원 등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p> <p>다. 장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성직자 등 관련 전문가</p> <p>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의사소통보조가 가능한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는자</p> <p>④ 법 제29조 제4항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⑤ 법원이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p>

(2) 보조인 범위의 확대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29조 제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7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 446 판결 참조). 이러한 보조인 자격의 제한은 삼례사건의 경우¹⁷⁾처럼 부모

17) 삼례 할머니 3인조 강도사건 -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 의해 할머니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근처에 살고 있던 정신지체 3급의 최씨(장애인등록증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신지체5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결국 자백을 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사건정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정신지체를 갖고 있어서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달리 도움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에게도 정신장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도움을 줄 만한 가족도 마땅히 없는 때 수사절차상 진술보조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자백을 유죄입증의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는 현 수사관행 하에서는 판단능력이나 진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나 어느 정도 판단능력 또는 진술능력은 있으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진술을 알아듣기 힘든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자백을 강요당하기 쉽고 또 이러한 피의자들은 강요에 의해 쉽게 자백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완전한 판단능력 또는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에 의한 장애인 피의자의 진술보조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조인의 자격범위를 친족과 호주에 제한하고 있어 그러한 범위 내에 보조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피의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범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수사절차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조인의 자격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22조의 2는 피해자가 신문하

없었다. 교도소 안에서 상담활동을 하던 교회의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범인이 아니라는’확신을 갖게 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부산에서 진범으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잡히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진술대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내용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진범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 가족들조차 최군과 그의 친구들이 범인일 리가 없다며 재수사를 원했다. 그러나 재심청구는 ‘전주지방검찰청이 피고인 최씨가 진범이라고 주장한 배씨 등 세 사람에 대하여 이들이 진범인지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혐의없음’(이는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기소할 만큼 증거가 없을 경우에 검찰이 내리는 결정임)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기초와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 피고인들은 재심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더 이상의 상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유죄판결을 다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최씨와 그의 친구들은 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하였다.

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성폭법과 같이 보조인의 자격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폭법이 위와 같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이므로¹⁸⁾ 형사절차상 진술보조의 측면에서 보조인 범위확대를 추진하는 본 형사소송법 개정논의와는 약간 그 취지가 다른 듯 보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보조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법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형사소송규칙 개정제안 제11조 제2항 참조). 아울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외형상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이나 의사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처럼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행 법 중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3. 1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1999. 1.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 3. 주요골자 중 가.항]. 장애인복지법이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해 놓고도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충과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국가예산이나 행정의 제약상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보호는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도 모든 장애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변호인 제도의 확립으로 보조인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상실되어 실제로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를 활용하는 예는 드물고, 보조인 제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인 제도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사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그 운용의 실효성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표 35> 국선변호인의 선정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33조(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5. 생략.	제33조(국선변호인)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법원은 제29조 제4항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직권 또는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보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선정사유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형사재판단계에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보조인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보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변호인 또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보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와 보조인 제도를 함께 규정하더라도 양 제도 간의 마찰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재판서 등의 작성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또는 재판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사관 등이 진술자가 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이거나 조사시간이 촉박하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진술자에게 조서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주고 서명날인(무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관 등은 진술의 요지만을 간략히 전달하거나 범죄사실에 끼워 맞춘 자백내용을 진술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라는 이유로 강변하여 진술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서는 진술자가 직접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 36> 재판서 등의 작성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의 형태로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방법) ①~⑥ 생략.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①~⑥ 생략. ⑦ 피고인, 피의자, 증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나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된 조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1조(장애인의 통역)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③ 생략.	제244조 ① 생략. ② 피의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 전항의 조서를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형태로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가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 정신지체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인 또는 비디오테잎 등을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2항, 제3항
<p>형사소송규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신설</p> <p>제92조(통역인의 운용)</p> <p>① 법원은 유자격 전담 수화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청각장애인이나 공동정범 중 여럿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각기 다른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p>	

(1) 시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

조서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가 한글로만 작성되는 관계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부득이 수사관이나 보조인이 진술내용을 읽어주어 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나 재판서 등 관련 서류는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도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점자나 플로피디스켓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전체 시각장애인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점자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이 많아지므로 점자 이외에 플로피디스켓 형태로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각장애인은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술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내용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원이나 경찰청, 경찰서에 음성지원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를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전담통역인의 운용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별로 수화통역인이 바뀌는 경우 각 통역인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 피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법률용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담통역인제도를 마련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동일한 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화통역사의 경우 1인이 장애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통역하거나 여러 명의 공동정범을 통역하는 경우에는 체력소진 등이 심하여 제대로 된 수화통역이 어렵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왜곡된 통역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당사자별로 전문통역사를 배정하여 통역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서의 작성방법의 제안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예를 들어,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관이 질문을 작성하면 그에 대하여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답변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4) 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정신지체장애인의 진술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보조인이나 비디오테잎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표 37>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형사소송규칙)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제안]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등)

①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증인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하게 할 수 있다.

제128조(피고인신문의 방법) ① 현행 규정

②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고인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고인이나 증인(예를 들어,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워드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의 마련

<표 38> 장애인 등의 민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마련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제안
제198조(주의사항)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8조(주의사항) ① 현행 규정 내용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또는 의사를 전술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수사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의 신설 ①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정신지체장애인, 아동, 노인으로서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보조인을 두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가 장애인으로서 수사상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일반선언규정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제안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장애인이나 아동 등에 대한 인권보호가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선언규정을 넘어서서 수사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잘못된 현실 개선을 위한 실천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경우 공간적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감을 감소시키고 최선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현장(경찰서 내부)의 공간적 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수사자의 인적사항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장애인 보호의무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피의자에게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전문위원회의 설치 추진

장애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특성이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학계, 학계,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또는 법무부나 대법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문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개정제안에 규정된 “관련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로 대체되고, 상대적으로 보조인 제도의 운용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이나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장애인차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시적이나마 대법원규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장애인평등법에 의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형사절차상 장애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대법원이나 법무부 또

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문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 위원회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에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 형사소송법 제26조에 대한 재고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규정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능력은 소송능력(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의사능력 없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나 그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실무상 형사소송법 제26조에 따른 법정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2(전문가의 의견조회)¹⁹⁾와 같은 규정을 형사소송규칙에 두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의사무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결론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은 인간의 결정의 자유를 논리적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할 능력, 즉 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에 한해

서만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제도와 사법제도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행위능력(책임능력)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미흡한 듯 합니다. 더욱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행위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책임의 원칙에 의한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장애인은 대부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각각이 가진 장애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벌권은 국가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엄격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는 장애인 각각의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의 정확성 보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형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꾀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제안은 현행 불합리한 수사관행과 및 형사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 정의적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범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 ①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료소견 및 가정폭력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록 - 보험차별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Group	
Received by : STL	
No. : 2004-0010	
Date : 04. 02. 19. 10:25 AM	
R. Atty: STL Esq.	
Copy to: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번호: 2003가단150990 손해배상(기)
원고

시흥시 정왕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태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푸르덴셜 타워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제임스 채스 퍼스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경

담당변호사 조용연

변론종결일: 2004. 1. 27.

판결선고일: 2004. 2. 12.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2004. 2. 12.까지는 연 5%, 2004. 2. 13.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진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미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가하는 모든 인보협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의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뇌에 대한 비진행성 병변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과 자세에 장애를 보이는 임상증후군, 즉 뇌성마비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2) 원고는 1995. 2. 경 천안복인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95. 3. 경 서강대학교에 특례입학하여 2000. 2. 경 졸업하였고, 위 학창시절에는 학생회장 및 학보사의 기자로 일한바 있으며, 2002. 3. 경부터 영어학습교재 판매회사에서 웹마스터 겸 디자이너로 근무하여 왔다.

(3) 한편, 원고는 뇌성마비의 일반적인 증상인 근육의 강직 또는 마비(특히, 하체에 비하여 상체의 마비 정도가 심하다)로 인하여 운동과 자세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긴 하나, 정상적인 지능의 소유자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언어장애 및 난청이 있으나 일상의 대화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나. 원고의 보험청약 경위

(1) 원고는 2002. 9. 경 피고의 보험모집인(Life Planner) 소의 채송아로부터 피고의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채송아의 권유 및 설계에 따라 별지 보험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이하 종신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기로 결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9. 25.경 위 채송아로부터 보험계약청약서를 교부받고 현재 및 과거의 질병·현재의 장애상태 등을 물는 해당란에 사실대로 기재한 다음, 위 채송아에게 작성 및 서명을 마친 위 보험계약청약서와 위 종신보험의 제1회 보험료 150,8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채송아는 위 보험계약청약서에 '원고가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 상담해 본 결과 웨마스터 일파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외관상의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거의 없었고, 이제까지 병치료도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건강진단을 받아서라도 위 종신보험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기를 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승낙거절

(1) 피고는 2002. 9. 27.경 위 채송아로부터 위 보험계약청약서와 위 제1회 보험료를 교부받고 2002. 10. 초순경 원고의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장애1등급에 해당하여 피고의 계약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인수거절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두렵 위 채송아에게 원고의 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2) 위 채송아는 원고의 장애 상태가 실제로는 그리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에

게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장애1등급 보다 낮은 등급의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위 채송아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원고는 장애등급판정을 변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02. 10. 25.경 원고에게 거절사유를 "의적거절"로 한 보험청약승낙거절통지서를 발송하고(이하 이 사건 승낙거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제1회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위 수령기간 동안의 이자를 더한 151,600원을 반환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등

(1) 피고가 이 사건 승낙거절시 참조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이하 공통심사기준이라고만 한다)은, 피고가 속한 생명보험협회에서 2000. 10.경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통적인 계약심사기준을 설정한다는 목적 아래 정한 것으로, 장애등급분류표상의 71개 장애항목 중 상법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위험즉정이 불가능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9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청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위 거절항목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1급 제3호)' 또는 적어도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제2급 제1호)' 아니면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제4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한편, 원고가 장애 1급 판정을 받을 당시인 1993년경의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현행의 법령과 달리 뇌병변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체장애인(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으로서 지체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2급(두 팔에 완전강직, 고도의 무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두 팔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였으나 다리 및 청각 등의 중복장애가 인정(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절할 수 있다)되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원고는, 현행의 법령에 의할 때 자신의 장애등급은 상체의 장애(선반에 물건을 옮기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다)로 인하여 뇌병변장애인 2급에 해당하나 지체장애 이외의 중복장애가 인정되어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근거 : 다른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의 1·2·3,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2·3·4, 갑 14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1·2·3,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6호증, 증인 채송아,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무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괴고는, ① 공보법이 아닌 사보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로서는 계약심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권리가 있고, ② 나아가 원고의 장애상태에 비추어 그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이 사건 승낙거절은 균질적인 위험발생의 개연성을 가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보험제도의 본질과 보험사고의 개연성 및 현재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다룬다.

三、中華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에 과학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을 함께 본다.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및 제5항(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사보험의 영역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서 정한 위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를 이

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때의 차별이란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차별, 즉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객관성·합리성에 기초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든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환경에서 볼 때, 계약자유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사보험회사가 갖는 광범위한 자유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사회질서·공공복리의 존중에 의한 권리의 내재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보험회사가 갖는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보험회사가 보험승낙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취지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구조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승낙여부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며,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물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승낙거절이 원고의 장애등급과 공통심사기준이 설정한 거절사유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공통심사기준의 성격이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승낙거절이 위법한지의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승낙거절이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 구체적·개별적 사안, 즉, 원고의 장애 정도와 위 종신보험의 성격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에 비하여 짧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장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원고의 기대여명 또는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인수를 거절함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원고의 기대여명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로는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8 내지 20호증, 을 4호증의 1·2, 을 5호증이 있고, 그 기재를 종합해보면, 뇌성마비 장애인 중 독립적인 거동성을 상실하였거나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장애인의 특정 시기까지의 생존율은 일반인의 생존율에 비하여 풍자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근거로 뇌성마비 장애인 중 원고와 같이 정상적인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거동이 가능한 뇌성마비 장애인(또는 공통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절사유 중 원고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주의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에 비하여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위 증거자료들(특히,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애 상태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기대여명이 짧다거나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낙거절의 근거로 든 공통심사기준의 거절사유(예컨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주의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즉정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을 1호증 2면), 위험즉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위 거절사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일반적·주상적 장애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 장애 상태를 전제로 할 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위험즉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낙거절의 원인이 된 공통심사기준의 거절사유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있어 어떠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 승낙거절이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생명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피보험자)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 및 정도와 그가 가진 장애등급(증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단지 그가 잠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 1등급(이는 피고가 가진 장애등급분류표상의 장해등급과는 그 분류의 목적·방식·내용이 상이한 것이다)에 해당하고 합리성을 결여 한 것으로 보이는 공통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것은 그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고, 합리적인 통계적 원칙 또는 전문가의 과학적 진단결과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제공을 거부하거나 축정 및 계량화 등을 통하여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까지도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피고의 2004. 1. 20.자 준비서면 9.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외국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방식은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위법의 인식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금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은 위 종신보험의 청약으로부터 이 사건 승낙거절에 이르기까지의 결과와 이 사건 변 흔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활작하고, 특히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이 위에서 인정 심이 높아지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에서의 차별도 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 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낙거절 당시 의거하였던 공통심사기준의 정립 배경 또한 장애 인에 대한 차별완화에 있었던 것인 점, 지금까지도 인적·물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보 애인의 기대여명 등에 관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자료가 확보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승낙거절이 장애인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등을 착작할 때, 그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3. 5. 27.부터 피고가 그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04. 2. 13.부터 다 잠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어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화문설**

사단법인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137-084>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6층 / 전화: 02-521-5364 / http://www.cowalk.or.kr

- 발신: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담당: 박숙경 팀장 521-5364)
- 수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자: 2003. 2. 20(목)
- 제목: 대구 지하철 화재 관련 언론사의 '장애'와 관련한 보도태도에 대한 성명

성명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고인이 된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언론사는 사실과 다른 보도와 지나치게 장애를 부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보도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혜명보도 하라!!!

지난 18일 대구 지하철 폭화사건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전국을 슬픔과 분노로 빠지게 했다.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 오열하는 유가족들, 분노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TV와 라디오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의해 보도되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날 사고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슬픔을 안겨주었다.

방송과 라디오 신문 그리고 인터넷을 망라한 언론사들은 예기치 못한 대형참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용의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보도'하고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장애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40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셋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못한 혹독한 보도 태도로 문제의 본질을 흐도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어야 할 주요 언론들이 국민적 관

심이 집중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고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오히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혹독한 편견을 드러내어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한 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사실 용의자 김씨는 혼한 질환인 중풍에 의한 후유 장애에 의해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으로 19일 보건복지부가 동사무소와 중풍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어떠한 단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18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대부분의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용의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라던가 심지어는 MBC의 9시 뉴스에서는 취재기자의 맨트에서 '어이없게도 용의자가 정신지체인'이라고 까지 언급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또한 KBS 1TV 뉴스속보에서도 용의자를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로 보도하거나 뇌병변장애와 정신질환마저도 혼동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내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한 KBS 1TV 뉴스속보내용과 관련하여 정신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대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의 언론을 대표하는 이들 방송사가 장애와 관련하여 매우 상식적인 사실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도내용과 관련한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파급력과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의 신중하지 못한 보도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50% 수준에도 못미쳐

지금껏 드러난 사실에 의할 때 용의자는 정신질환자도 아니며 더욱 정신지체인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용의자가 정신질환자인가 아닌가'라는 사실에 우선하여 용의자를 정신질환자로 몰며 마치 모든 정신적 장애인이 매우 위험한 집단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신질환을 포함한 정신적 장애는 다양한 장애영역중에서도 가장 편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정신질환자는 아무 때나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다. 실제로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의 50%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오히려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체 강력범죄중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0.37%로 극히 적은 수치를 점하고 있다.(2000년도 범죄백서) 그러므로 정신적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공격적인 대상이 아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장애를 지나치게 부각하여 장애에 대한 낙인을 강화

또한 용의자 김씨는 수많은 장애인 중 한사람일 뿐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확인된 사실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라디오와 TV 방송사들은 용의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뉴스 첫머리에 주요하게 보도하였으며 신문 등 지상매체에서는 타이틀과 기사 첫머리에 게재하였다. 이로 인해 보도를 접한 많은 국민들은 '용의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결과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며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우

리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대중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질 정도가 되었다고 심경을 토로해 오고 있다.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는 용의자 김씨의 '방화'에 의해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대중의 인명을 담보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안일한 대처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한 장애인의 화풀이성 방화에 의한 사고로 몰고 가 정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찰과 지하철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을 언제든 위험한 사고를 불러올 위험집단이라는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우리는 언론매체들이 장애와 관련 이번 참사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을 정정해 줄 것을 바란다. 또한 향후 이 같은 보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한 인식과 지식에 입각한 신중한 보도태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보도과정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앞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테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 테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라!

3.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 보도태도에 대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4.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용의자의 신변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등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관련 언론사들은 즉각 사과하고 해명 보도하라!

2003년 2월 6일

장애인/우/권/의/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137-084>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목빌딩6층 / 전화: 02-521-5364 / http://www.cowalk.or.kr

- 발신: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수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자: 2003. 10. 24(금)
- 제목: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에 대한 성명

성명서

잇따르고 있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 10월 19일 한 아버지가 경추탈골증후군을 앓아 전신마비 장애 상태로 있던 자신의 딸(19세)의 산소호흡기 전원을 꺼 죽음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들어 정신지체를 가진 손자의 장례를 염려해 동반 자살한 할머니, 사고로 정신장애를 가지게 된 남편을 짊겨 죽인 아내 등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제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로 어느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고 관대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가 일어날 경우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느냐며 장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를 동정하고 선처를 바란다. 그뿐 누구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당사자인 장애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

가족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비극의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와 사회에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장애를 가진 자식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장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라면, 그리고 장애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가족들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부모가 피붙이인 자식을 살해하는 가슴아픈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전혀 희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살기에는 온통 가시밭길뿐이고, 그런 장애인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의 절망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힘들다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장애인이 모두 죽어야한다면, 분명한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장애인도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

현재 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깊은 절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타까워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살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무방비상태일 수밖에 없는 자녀를 살해한 것은 범죄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더라도, 또 장애 때문에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내 자식이라는 잘못된 소유욕으로 살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최근 연이어 이어지는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를 가족이 아닌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한다.

먼저 빈곤과 장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충분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의 경우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자녀 살해의 주원인이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장애 때문에 필요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

지 않고 개인이 감당할 경우 조만간 우리는 또 다른 장애인의 죽음을 목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장애인 가족을 돌볼 때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죽음을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장애인들은 심하게 말하면 가족에 의해 제거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장애인들은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을 살해한 가족들은 사회의 동정을 받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가족에 의한 장애인 살해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도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소중한 권리가 타인에 의해 해손당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비록 가족이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중처벌 등 선례를 남김으로써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 의해 장애인이 살해당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회는 더 이상 장애인을 죽이지 마라, 분명 풀 한포기보다는 더 소중한 장애인의 생명이 경시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24일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문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고 문제 시설을 폐쇄하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인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에서 자행된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진지 3개월이 넘었다.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들을 징벌방에 가두고 금식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외부인과의 통신과 면회를 차단하며 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눈을 찌르는 안수기도가 자행됐다. 강제노역과 특정종교가 강요되며 보호자 동의 없이는 평생 출소할 수 없는 무법천지가 바로 정부에서 조건부신고를 받아 합법화 시킨 두 시설의 현실이다.

두 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분노하며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두 시설의 시설장들은 생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등에 업고 그동안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에 따라 범법자를 가려내야 할 경찰은 잘 모른다며 미적거리기만 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복지시설의 열악함을 감안해 무조건 단속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무대책을 변명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호자·시설장이 공범인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다. 보호자는 가족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격리하기 위해 시설을 찾고, 시설장은 생활자가 많을수록 각종 외부지원이 많아지니 허위 진단서를 받는 위법까지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국가는 골칫거리인 이른바 “사회를 위협하는” 자들을 손쉽게 격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 수용시설을 간택하고 조건부신고까지 받아들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만다.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격리해온 사회원리가 시설 생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본다. ‘정상’이 아니라는 차별관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계토로 내모는 것을 당연시 해왔듯이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들도 마땅히 격리되어야 할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다. 결국 이들은 감금을 통한 신체의 자유 박탈이라는 극한 지경까지 내몰렸다.

이 침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져 온 위법 행위를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그 잣대에 따라 문제시설의 시설장과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이 다시는 유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두 시설에 대한 법적 조치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시설에도 경종을 울릴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인권침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2002년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지침을 통해 국가는 불법상태의 복지시설에 '조건부 합법'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감독과 지원 책임은 방기해버렸다.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이 지침의 조건부신고 대상에서 최소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하라는 정책권고를 대한민국 정부에 낼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다수인 보호시설이 국가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엇보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시설 생활자들을 외면해 왔다.

우리는 추후 국가와 시설장을 상대로 시설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와 국가의 책임방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산평계를 대며 시설 내 인권침해를 모른 척 해온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각계에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알리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고발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한 시설장과 관계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처벌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한 2002년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지침'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설 복지정책이 시설운영자 편의가 아니라 시설 생활자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정책권고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두 문제시설 생활자들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뜻에 따라 귀가·전원 조치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문제 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폐쇄 등 대책을 마련하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좋은집, 태화샘솟는집,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7개 단체)

2002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유형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1. 노동권	(1) 노동기회차별	1) 취업기회 제한 2) 면접 시 탈락 3) 모집 공고 제한 4) 부당 해고 5) 직업 훈련 제한 6) 원서 접수 거부 7) 적절한 시험 환경 부재 8) 기타
	(2) 노동 환경 차별	9) 적절한 직무 환경 및 업무 배치 차별 10) 다른 동료에 비해 승진 차별 11) 중도 장애로 복직 연기 12) 장애로 퇴직 강요 13)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차별 14) 다른 동료에 비해 임금 체불 15) 다른 동료에 비해 저임금 16) 기타
	(3) 산재 보상 차별	17) 보상 시 장애인 차별 18) 산재 인정 차별 19) 기타
	(4) 기타	20) 기타
	(5) 모성 권리 차별	21) 산전 후 조리 차별 22) 장애인 유로 양육권 침해 23) 낙태 강요 24) 기타
	(6) 성 차별	25) 여성 장애를 이유로 재산권 침해 26) 여성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 침해 27) 여성 장애를 이유로 노동 기회 침해 28) 기타
	(7) 폭력	29) 가정 내 성 폭력 30) 성 폭력 31) 가정 폭력 32) 폭력 33) 기타
	(8) 기타	34) 기타
	(9) 생계 유지 권리 차별	35) 생활 고
	(10) 기타	36) 생계 유지 수단 제한 37) 기타 38) 기타
3. 생존권	(11) 진료 권리 차별	39) 진료 계획 참여 및 알 권리 침해 40) 건강에 대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41) 병의원 진료 거부 42) 서비스 기관 부재 43) 기타
	(12) 적절한 치료권 차별	44) 수술 비필요 45) 진료 비필요 46) 간병 제도 미비 47) 의료 재활 치료 필요 48) 기타
	(13) 기타	49) 기타
4. 건강권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5. 교육권	(14) 교육기회차별	50) 취학기회박탈 51) 모집요강제한 52) 연령제한 53) 원서접수거부 54) 편입학거부 55) 교육기관부재 56) 진학거부 및 강요 57) 기타
		58) 편의시설미비 59) 학급내인간관계차별 60) 통합교육거부 61) 교육프로그램참여거부 62) 적절한시험환경부재 63) 학습도우미필요 64) 수화점역교재등필요 65) 교육비지원 66) 기타
		(16) 기타 67) 기타
	(15) 교육환경차별	68) 참여제한 69) 문화공간편의시설미비 70) 문화비용필요 71) 기타
		(17) 기타 72) 기타
		73) 교통시설제한 74) 도로환경제한 75) 편의시설미비 76) 안내표지판및방송등미비 77) 기타
	(19) 이동권차별	78) 건축물접근권차별 79) 주차제한 80) 기타
		81) 지역주민거부 82) 거주이주권침해 83) 기타
		(22) 기타 84) 기타
8. 정보접근권	(23) 정보기본권차별	85) 자기정보통제권 (프라이버시, 반감시권, 주민번호유출등) 86) 정보공유권리 (저작권, 특허권, 전자도서관등의정보제한등) 87) 정보접근차별 88) 기타
		91) 수화및자막서비스제한 92) 접자및음성서비스제한 93) 컴퓨터이용권제한 94) 상징적그림서비스제한 95) 기타
		(25) 기타 96) 기타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9. 지원서비스	(26) 비용지원차별	97) 이동비용지원필요 98) 양육비용지원필요 99) 의료비용지원필요 100) 음자지원필요 101) 기타(주택개조비용지원 등)
		102) 심리상담필요 103) 이동도우미필요 104) 가정도우미필요 105) 수화점역등필요 106) 기타
		(27) 도우미지원차별 107) 보장구구매및수리비용필요 108) 보장구품목제한 109) 기타
		(29) 기타 110) 기타
		(30) 선거권차별 111) 투표권침해 112) 기타
10. 참정권	(31) 선거접근권차별	113) 선거정보접근권침해 114) 투표소접근권침해 115) 기타
		(32) 기타 116) 기타
		(33) 보험금용사용권차별 117) 보험가입제한 118) 보상금제한 119) 기타
		(34) 구매권차별 120) 음식점등서비스기관출입제한 121) 구매제한 122) 불친절및무시 123) 기타
		(35) 행정접근권차별 (불친절, 무시, 정보미제공으로 인한 피해) 124) 행정접근제한 125) 기타
11. 소비자권리	(36) 기타	126) 기타 127) 불법체포 128) 자백강요 129) 기타
		(37) 법절차위반 130) 의사소통제한으로수사미진 131) 진술의신빙성불인정 132) 기타
		(38) 피해자로서권리침해 133) 기타(가해자권리침해 등)
		(39) 기타 134) 자기결정권침해 135) 사생활권리침해 136) 기타
		(40) 사생활권차별 137) 심리및언어폭력 138) 폭력 139) 성폭력 140) 기타
12. 형사상권리	(41) 폭력	141) 적절한서비스수익차별 142) 기타
		(43) 거주이주권차별 143) 거주이주권리침해 144) 기타
		(44) 기타 145) 기타
		(42) 적절한서비스수익차별 141) 적절한서비스받을권리침해 142) 기타
		(43) 거주이주권차별 143) 거주이주권리침해 144) 기타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14. 가족권	(45) 결혼 할 권리차별	146) 장애이유로 결혼반대 147) 결혼제한 148) 기타
		149) 자기결정권 침해 150) 가정폭력 151) 가정내성폭력
		152) 장애로 이혼별거 153) 가족임의시설입소추진(본인의사외시설입소) 154) 장애자녀출산으로 이혼 155) 기타
	(46) 가족생활권차별	156) 기타
		157) 심리 및 언어 폭력 158) 폭력 159) 성 폭력 160) 누명 161) 기타
	(47) 기타	162) 기타
		163) 사기
	(48) 폭력	164) 절취 및 갈취 165) 상속권 제한
		166) 기타
	(49) 기타	167) 기타
16. 재산권	(50) 재산상 불이익	168) 사기
		169) 절취 및 갈취
		170) 상속권 제한
	(51) 기타	171) 기타
		172) 기타
	(52) 장애등록	-
	(53) 경제영역	-
	(54) 의료영역	-
	(55) 교육영역	-
	(56) 노동영역	-
17. 정보제공	(57) 문화영역	-
	(58) 성과결혼	-
	(59) 여성	-
	(60) 복지시설	-
	(61) 보장구	-
	(62) 접근권	-
	(63) 자동차	-
	(64) 법률정보	-
	(65) 직업	-
	(66) 기타	-
	(67) 장애등록	-
	(68) 경제영역	-
	(69) 의료영역	-
	(70) 교육영역	-
18. 정책건의	(71) 노동영역	-
	(72) 문화영역	-
	(73) 성과결혼	-
	(74) 여성	-
	(75) 복지시설	-
	(76) 보장구	-
	(77) 접근권	-
	(78) 자동차	-
	(79) 법률정보	-
	(80) 기타	-
19. 정서적지지	-	-
20. 기타	-	-

인권센터의 상담활동에 대한 총괄 평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의 활동가들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나 공동의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 두 곳의 기도원이 사람들을 사실상 세상과 격리하고, 치료가 아닌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가는 인권사각지대를 고발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했던 것이다. 그런 활동의 결과가 현재의 '조건부시설공대위'로 귀결되었고, 공대위는 조건부 시설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인권센터의 활동가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방을 오르내리는 고된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인권상담 활동을 정리하겠다고 이에 대한 총평을 부탁해왔다. 다른 사람들이 부탁했다면 나는 이 평계, 저 평계 둘러대며 거절했을 것이다. 요즘의 일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일정을 불러주는 것으로 아주 적절하게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권센터 활동가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에는 함께 기도원의 조사를 하고, 공대위 결성까지 해놓고는 다른 활동으로 빠져나간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고,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가를 잘 알기 때문이다.

인권상담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다른 일을 접고 상담만 전문으로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전문 상담요원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현장을 뛰어 다니는 4명의 활동가들로 상담활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무모한 용기일 것이다. 그 용기를 더해서 이제는 아예 상담보고회를 한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기를 쓰고 상담사례를 보고하는 것- 이것은 더욱 무모한 일이다.

그런 무모한 일로 보고서가 나왔고(내게 5월초까지 준다고 했던 것이지만) 보고회까지 오늘 치룬다. 보고서에는 이들 4명의 활동가들의 상담활동 전과정이 들어있다.

다만 분명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미약하다. 자신들이 소감 정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상담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완해야 될 점을 강조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빠져 버렸다. 상담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정리하고 있고, 이는 분명 소중한 지적 이지만 보고서의 대미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년 내내 상담활동을 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였을 인권센터의 활동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이 자리에서 소장, 또는 이사들에게 인권센터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분명한 요구를 내는 것은 어떨까).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체계적인 상담활동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며, 이런 활동들이 조금씩 나아간다면 한국 장애인운동에서 매우 소중한 활동 영역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일단 보고서를 통해 보았을 때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상담 요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4명의 활동가가 하루 평균 2건 이상(365일 근무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실제 3건 이상)의 상담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활동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치게 벅찬 일이다. 지난 한해의 상담 건수 728건은 정확하게는 상담 사건의 접수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당 수없이 이루어졌을 실제적인 상담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사활동과 대사회적인 폭로까지로 이어져야 할 것 등

매우 다양한 층위의 사건들이 접수될 것인데 이를 단순히 몇 건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부정확한 일이다. 보고서는 인권센터의 활동에서 상담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활동을 전적으로 4명의 활동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상담요원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일원적으로 상담과 현장활동을 연결하는 일원적 구조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버거운 일임은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유형 분석틀과 관련된 것이다.

상담유형 분석틀은 자체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애매한 분석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눈에 뜬다. 가령 '소비자 권리'(보험금융사용권, 구매권, 행정접근권 차별)란 항목은 인권센터의 상담유형 분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싶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차별행위와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호한 분류 기준은 노동권과 생존권, 재산권으로 나뉘어진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의 권리는 노동권과 생존권의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노동과 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의 문제, 노동3권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생존권의 경우에 사회보장의 권리가 주내용이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항목에서도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산권은 인권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들이 다른 가족 성원들이나 주변인들에 의해 수시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재산권 이란 개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는 고민해볼 지점이다. 또 정보제공권이라는 항목도 불분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접근권, 정보접근권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의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는 내담자가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다. 이런 문제는 분류 항목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여성 장애인의 권리는 다른 구성 항목들과도 중첩되고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인데 장애인 중 여성이라는 다시 이중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할 주체인데 전체적으로 비중이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바이기는 하지만 상담의 과정이 제대로 분석될 수 없는 틀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상담 접수에서 사건의 종료까지의 과정이 이 틀에서는 보여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듦다. 상담의 흐름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반영한 분석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 구제와 같은 것은 법률지원단으로 사건을 넘겼다든지 연구소의 다른 부서로 넘겼다든지 등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한다. 분석 보고서에 그것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유형분석 틀 자체가 그런 한계를 애초에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상담유형을 분석하는 데에 인권적 분류 방식을 보다 고민해야 할 것이고,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 거기에는 보편적 인권의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로운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분석 보고서의 문제다. 상담 원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 보고서는 상담활동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분석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석 보고서는 매우 평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만약 상담유형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런 상담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이것은 실제 인권센터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다 종합적이 분석이 될 것이라 점이다. 보고서에서 과정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연유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것이지만, 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무언가 바람직한 제안 한 가지라도 하는 일일 것이다. 위에 든 몇 가지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권센터가 장애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을 하고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전화로, 이메일로라도 호소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것은 숨막힐 것 같은 세상에서 자그마한 숨통이라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상담센터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센터이거나 치료, 재활과 관련된 센터들일 것이다. 이들과는 다른 장애인인권운동을 하는 관점에서 연구소의 인권센터는 작동할 것이고, 상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복지와 치료, 재활이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항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라는 자부심을 활동가들은 가져야 한다.

그 자부심 위에서 한 가지 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어쩌면 괜한 지적일 수도 있다).

연구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들과 호흡도 척척 맞는 것 같은 모습-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참 좋았다.

이런 원칙은 상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내담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는 일은 보고서에서 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사실 보고서에서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상담으로 들어오는 사건들을 풀어낼까 하는 고민은 담겨 있을지언정 내담자인 장애인 본인, 그 가족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려는 관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상담활동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상담활동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오류(당연히 나도 겪는 일임)는 내담자를 대신해서 활동가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일이다. 같이 풀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실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확히 관점이 옮겨져야 한다. 인권운동은 인권피해자들이 스스로 주체로 서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는 주로 하는 상담활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 위에서 상담활동도 어떤 전략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 전화나 이메일로 들어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 기획수사를 하듯이 상담도 장애인 인권운동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찾아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활동 목표와 동떨어진 상담활동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안은 사실 사족이다. 인권센터의 활동가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더욱 잘 정리된 보고서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